

# 「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입안 계획서

(’23. 3. . 원산지검증과)

## I. 행정규칙명

- 「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(관세청훈령 제2168호, ’21. 12. 28.)

## II. 개정 사유

-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
-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
- 관세법 및 관세청 훈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
-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

## III. 주요 개정 내용

### 1.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

- 불복 단계에서 재조사로 결정 시 청구인이 후속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재조사 정의 및 처리 절차(재조사 기간, 범위) 신설 (§2, §83조의2)
- 협정관세 적용보류 만료 통지 및 안내 절차 신설 (§59조의2)
  - 협정관세 적용보류 시에는 보류에 대한 안내 통지가 있으나 보류 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 통지가 없으므로 안내 서식 및 규정 신설

### 2. 실효성 있는 원산지조사 업무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정 정비

- 원산지조사 세관 관할구역 및 관세청장의 관할 조정 승인 대상 정비, 승인요청 시기를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시로 명확화 (§6, 별표1)

- 「한-미 FTA 통관원칙」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」의 원산지 조사 기간 등(조사 기간, 연장 사유)을 훈령에 반영 (§15조의3)
-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운영 필요성 감소 현황 등을 반영하여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를 폐지 (§31)
-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시 인증수출자 관할 관리부서에도 통보 규정 신설 (§35)
- 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기간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의 승인 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조사기간으로 포함하여 규정 (§15, §67)
- 국제 간접조사의 경우 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조사 결과보고 시점을 ‘원산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’로 명확히 규정 (§64)
- 협정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특혜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 전에 예비결정 내용을 관세청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 추가 (§67)

### **3.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**

- 「관세법」 제232조의3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('21.12.21)에 따라 수출 물품 정기조사 선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위원회 심의 조문 삭제 (§39, §40)
-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5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규정이 원칙적 발급, 예외적 배제로 개정('22.12.31)됨에 따라 동 계산서 발급 제한 조문 삭제 (§53, §74)

### **4. 훈령 서식 신설 및 정비**

-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
  - ‘협정관세 적용 보류 만료통지서’(제59조의2 관련 별지 35호의2),
  - ‘원산지조사(재조사) 결과통지서’(제83조의2 관련 별지 50호의2)

## □ 서식 개정

- 신규 발효협정 추가, 조사기간 및 자료제출기한 작성법, 국문 및 영문표현 현행화 등
- ‘정보분석 계획보고서’(별지10호), ‘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’(별지12호), ‘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’(별지13호), ‘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’(별지14호), ‘본청 대표 서한문’(별지24호), ‘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’(별지25호), ‘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’(별지36호), ‘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’(별지37호), ‘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통지서’(별지38호), ‘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서’(별지38호의2), ‘국제 서면조사 통지서(영문)’(별지40호), ‘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(영문)’(별지41호), ‘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(영문)’(별지41호의2), ‘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(영문)’(별지42호), ‘원산지증빙자료 등 제출 동의서(영문)’(FORM45), ‘제출자료 보관증’(별지47호, FORM47), ‘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’(별지49호), ‘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문’(별지53호) 등

## IV. 규제대상 여부 : “해당 없음”

## V.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## VI. 시행일자(예정) : 2023. 00. 00.

## VII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
- 담당자 : 김무단이 사무관(☎ 042-481-3213)  
김남웅 주무관(☎ 042-481-3287)
- 제출방법 : E-mail([verification@korea.kr](mailto:verification@korea.kr)), FAX(042-481-7749)